

일반 ISA 제도 정비는 ISA의 제도 취지, 정책 목표 등을 종합 고려하였습니다.

< 보도 내용 >

- 2026.8.5. 서울경제 “국민 자산증식 상품이라더니...국내 상장된 美 ETF 절세전략 막혀”, 국민일보 “국장만 하라는 생산적 ISA... 기존 일반 ISA 혜택 확 줄였다”, 매일경제 “ISA 5년만기 도입에...‘장투·복리기회 사라져’ 투자자 분통” 제하의 기사에서,
 - 최대 계약기간 5년 제한, 연간 납입한도 미사용분 이월 폐지 등으로 일반 ISA에 대한 세제 혜택이 대폭 축소되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.

< 재정경제부 입장 >

- 정부는 국내 자본시장을 통한 국민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국내 투자 시 세제혜택을 강화*한 ‘생산적금융 ISA’ 신설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.
 - * 이자·배당소득 전액 비과세, 청년층 10% 소득공제 등
- 특히, ISA·청년미래적금 등 만기 시 생산적금융 ISA로 일시납을 허용하여 국내시장 장기투자를 통한 복리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설계하였습니다.
- 이와 함께, 일반(기존) ISA에 대한 제도 정비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.
 - ① 일반 ISA의 계약기간을 최초 3년 - 최대 5년으로 조정하여, 최대 5년마다 만기 해지 후 새로운 계좌에 가입하도록 합니다.
 - 최초 계약기간(3년)의 경우, 일반·서민형 소득기준,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여부 등 가입 요건을 계좌 가입 시뿐만 아니라 연장 시에도 심사하도록 하여 계좌 가입자 간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.

- 최대 계약기간(5년)의 경우, ISA 계좌는 한도(일반형 200만원, 서민형 400만원)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만큼, 계좌의 만기·해지 시점에 계좌 내 소득을 정산·과세하기 위함입니다.

② 연 납입한도 2천만원 미사용분에 대한 이월을 폐지합니다.

- 미사용분 이월을 통한 단기·일시적 투자보다 적립식 투자를 유도하려는 정책 목표를 고려하였습니다.

□ 다만, 위 제도 정비 사항 외 ISA에 대한 세제지원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.

- 3년 이상 투자 시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총 1억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.
- 기존 가입자의 계약기간은 인정됩니다.
- 신설 예정인 ‘생산적금융 ISA’와 중복 가입도 가능합니다.

담당 부서	세제실 금융세제과	책임자	과 장 박은영 (044-215-4230)
		담당자	사무관 정현엽 (potear02@korea.kr)

